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8923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에 맞게 서식을 개정하고 일부 잘못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은 대표자에게 부여된 번호이나 현재 노무법인 인가신청서와 인가대장에는 노무법인 기재사항으로 잘못되어 있어 대표자 기재사항으로 정비(안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24호서식)
- 나.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정비 (안 별지 제34호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노무법인 인가대장

(앞쪽)

인가 번호		인가 연월일	
설립등기 연월일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노무법인	명칭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사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분사무소	소재지		상근 사원 성명
정관 변경	날짜	변경 전	변경 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직무 보조원	성명	생년월일	입면 연월일	직위	주요 경력

그 밖의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다음 공인노무사는 붙임 증거서류에 따라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징계혐의자 조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번호	
사무소 명칭			
소재지			
징계요구자 의견			

제 호

징계의결 통보서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다음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징계요구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직인

위원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소재지			
공인노무사 을(를) 주 문 이 유 에 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529